

대한예수교 장로회
빛과 진리 교회 정관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0길 44

빛과 진리 교회 정관

주후 1995년 4월 제 정

주후 2014년 3월 개 정

주후 2019년 1월 개 정

주후 2019년 8월 11일 전면개정



제1장 총칙

제1조 교회명칭 및 소속교단, 헌법

- ① 본 교회는 「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진리교회」(이하 '본 교회'라 칭함)라 칭한다.
- ② 본 교회는 「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(합동)」(이하 '본 교단'이라 칭함)에 소속한다.
- ③ 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(합동) 헌법(이하 '본 교단 헌법'이라 한다)을 본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 본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헌법에 구속된다.

제2조 목적 · 교리

- ① 본 교회는 본 교단 헌법의 교리인 사도신경, 12신조와 대소요리문답,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운영원리인 정치, 헌법 시행령, 예배모범, 권징 등에 근거하여 운영한다.
- ② 교회 본질과 핵심 가치를 위한 전도, 기도, 교육과 지역사회 및 대안학교와 선교원, 수련원을 통한 섬김, 사회복지, 지역사회봉사 등 성도간의 신령한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.
- ③ 본 정관은 대표자 선임과 교인의 권리의무, 교회 재산과 재정의 소유 · 관리와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위치 및 시설

- ①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0길 44에 소재를 둔다.
- ② 본 교회의 예배당과 부속시설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된 것으로 한다.

제4조 교회조직

- ① 본 교회의 의결 기구로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를 두며, 치리와 중요정책 결정 및 재정집행을 위한 당회, 교회 봉사를 위한 제직회를 두며, 그 실행을 위한 기관, 위원회

및 소속회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.

- ② 모든 기관과 소속회의 운영은 당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, 담임목사가 지도하여 운영케 한다.

제2장 교인의 권리와 의무

제5조 교인 입회

다음 각 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입회된다.

- ① 본인이 교인등록신청카드를 제출한 자.
- ② 입교인(세례교인)인 자
- ③ 교회가 주관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
- ④ 입회된 교인은 공동의회 회원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.

제6조 교인 퇴회

다음 각 항의 조건에 위반한 자는 당회의 사법처리 또는 행정결정으로 퇴회할 수 있다.

- ① 교인등록신청카드에 허위로 기록한 신앙 이력이 드러난 자.
- ② 본 교회 설립목적과 정관이 규정한 교리에 반한 주장이나 이를 적극적으로 교인들에게 권유하고 선동하는 자.
- ③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.
- ④ 이단 등 본 교회 교리적 입장에 반한 자.
- ⑤ 성경과 본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교회질서를 해치는 자
- ⑥ 불법 분리 예배나 집회에 참여 및 권유한 자.

제7조 교인 의무와 권리

- ① 교인의 의무와 권리는 본 교단 헌법과 시행세칙에 의한다.
- ② 교인의 지위와 상실은 당회 결의로 취득 및 상실된다.
- ③ 본 정관과 시행세칙에 의하여 총유물을 사용한다.
- ④ 구체적인 교인의 의무 및 권리상실, 제한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3장 직원

제8조 직원의 구분과 임기

- ① 항존직 - 본 교회는 항존(恒存)직 직원으로 장로, 집사를 둔다.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,
 - 1.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
 - 2.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.
- ② 임시직 - 임시직은 부교역자, 권사, 서리집사이다.
- ③ 행정관리직원 - 교회행정과 관리를 위하여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④ 직원의 임기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9조 직원의 직무

- ① 항존직
 - 1. 목사 -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, 성례를 거행하고, 교인을 축복하며,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.
 - 2. 장로 - 치리회의 회원이 되며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.
 - 3. 집사 - 제직회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
 - 4. 권사 - 제직회의 회원으로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.
- ② 임시직 - 부교역자 및 서리집사는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행정관리직 - 당회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0조 직원 청빙·채용 및 예우

- ① 직원(항존직, 임시직, 행정관리직)의 선거, 청빙, 채용, 예우, 징계, 원로목사, 원로장로 등에 관한 규정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원로 목사에 관한 규정은 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4장 공동의회

제11조 조직과 운영

본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조직·운영한다.

-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세례교인(입교인)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.
- ② 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받은 날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.
- ③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, 서기는 당회 서기가 담당한다.
- ④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소집하되, 일시, 장소, 회의목적을 후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, 기타방법으로 3일 전에 교회에 공지하여야 한다.

1.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
2.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
3. 무흠세례교인(입교인)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
4.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
- ⑤ 결석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2조 의결사항

-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
- ② 예산안 및 결산, 감사보고 승인
- ③ 담임목사 청빙 및 장로, 시무집사, 권사 선거
- ④ 정관 제정 및 변경
- ⑤ 교회 본당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처분
- ⑥ 교단소속 및 노회 소속변경

제13조 의사·의결정족수

- ① 본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정관변경, 교단소속 및 노회소속 변경, 교회 본당 토지 및 건물 처분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 단,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고 결의시 다수 측과 공동의회 결의 정족수에 포함한다. 위임장 내용은 시행세칙에 규정한다.
- ③ 장로, 시무집사, 권사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
- ④ 원로목사, 원로장로 추대는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제14조 특별원칙

- ① 해임은 징벌권이므로 이는 당회 권한이며(목사는 노회 권한),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-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- ③ 본 교회 교인이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 안이 승인된 이후 재정장부 열람청원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5장 당회

제15조 조직 및 소집

- ① 당회장과 본 교회 시무장로(당회원)로 구성하며, 당회 서기는 당회장이 임명한다.
- ② 당회서기는 당회장의 허락을 받아 회의목적을 공지하며, 당회에 상정한다.
- ③ 당회는 회의목적을 후보 혹은 예배 시 구두 광고, 기타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하며, 주일에

당회를 소집할 경우 사전 공지 및 회의목적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. 단 주중에 소집할 경우, 1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④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.

1.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2. 당회원 과반수의 청원이 있을 경우
3. 상회가 회집을 명할 경우

제1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

- ① 당회장과 당회원(장로)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- ② 당회결의는 출석 당회원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공포로 성립한다.
- ③ 본 조항의 ①, ②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결의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제17조 당회의 직무와 권한

- ① 신령적 관계의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며,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살핀다.
 2.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의한다.
 3.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.
 4. 장로, 집사,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.
 5. 헌금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성한다.
 6. 재판회로 권징을 시행한다.
 7.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.
 8. 노회총대를 파송, 청원하며 교회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.
- ② 당회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.
 1. 본 교회의 예배 모범에 근거한 예배의식 전관
 2. 재정 집행 및 예산 결산 안 확정
 3. 교회 재산의 관리보존행위
 4. 교회 본당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재산 취득과 처분
 5. 재산 담보제공, 증여, 법인설립 등
 6. 교회 합병, 분립, 개척
 7. 소속 교단 또한 노회 행정유보(보류)

제18조 당회의 치리권 · 권징재판

당회의 권징재판은 본 교단 헌법 또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6장 제직회 (운영위원회)

제19조 제직회 조직과 운영

본 교회 집행 기구로 다음과 같이 제직회를 조직, 운영한다.

- ① 본 교회의 제직회는 시무목사, 장로, 집사, 권사, 서리집사로 한다.
- ② 제직회의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,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20조 제직회의 소집

①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담임목사가 한다.

1.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
2. 교회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

② 제직회의 소집은 6일 전에 공고한다.

제21조 제직회 정족수 및 의결사항

- ①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결석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② 제직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공동의회에서 요청한 사항
 2. 교회 구제 및 봉사
 3. 당회가 요청한 사항

제7장 재산 및 재정

제22조 재산의 등기 및 관리

- ① 본 교회의 재산은 「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진리교회」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상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한다.
- ② 교회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당회가 관리 보관한다.

제23조 재정운영

- ①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② 재정집행 및 운영의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- ③ 본 교회의 재정장부 및 회계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며, 기타 장부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 단, 재정 회계 장부 보존기간은 회계 서류가 완결된 익년 회계연도 초부터 기산한다.

④ 종교인 과세와 관련 재정장부는 구분회계로 하되 기타 내용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빛과진리 선교원과 학교의 재정을 지원한다.

제24조 재정 감사

- ①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인원과 위원을 선정하여 시행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감사를 시행하여 이를 당회에 보고 후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- ③ 감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